

03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소매점 씨는, 그 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으나 세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종전 신고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하였고, 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신고했으나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대리점에서도 자료를 꼬박꼬박 갖다 주며,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주류 구입 자료도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게 늘까봐 무척 걱정을 하고 있다.

생각 끝에 소매점 씨는 장부를 하여 자신의 실제소득에 대해 떳떳하게 세금을 내기로 결심하였다.

●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기장)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추계)하는 방법이 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명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결손금 불인정

사업자가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본 경우의 해당 결손금을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2) 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①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②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할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복식부기 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업종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옥탕업 | 1억 5,000만 원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500만 원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 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 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
 -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81조,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208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4 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